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FRS 9: 금융자산의 손상- Q & A

March 2015

At a glance

IASB 는 2014 년 7 월 24 일에 *IAS 39* 의 대부분의 내용을 대체하는 *IFRS 9*, ‘금융상품’의 완성본을 발표하였다. 동 최종 기준서에는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을 앞당기는 새로운 손상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추가적인 내용은 ‘In depth: *IFRS 9* – Expected Credit Losses’을 참고.

동 문서에는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시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공통의 이슈 중 일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IFRS 9* 에 따른 분류 및 측정과 위험회피 관련 이슈는 별도의 문서로 다루어진다.

Contents

기대신용손실	ii
금융자산의 대여금 및 미사용 요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ii
최장계약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iii
사업결합에서 매입한 채무상품의 손상회계	iv
신용이 손상된 자산	v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대여금	v
손상자산에 대한 제각 조건의 적용	vi

기대신용손실

금융자산의 대여금 및 미사용 요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Question:

IFRS 9의 문단 5.5.20에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 신용위험에 노출된 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대여금과 미사용 약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한도약정이 대여금과 미사용 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한도약정과 같은 어떤 한도약정은 특정 시점에 종종 미사용 약정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IFRS 9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이 측정시점에 대여금과 미사용 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가?

Solution:

아니다. IFRS 9 문단 BC 5.26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예외조항은 상환을 요구하고 미사용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업의 계약상 능력이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충분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어떤 금융상품은 보고일에 대여금 잔액이 0일 수 있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은 미사용 대출약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고일 직전에 발급은 되었지만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이 요구된다.

IFRS 9 문단 B5.5.39에서도 신용카드에 대해 대여자가 짧은 기간의 통지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여자가 더 긴 기간 동안 신용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사례로 들고 있다. 신용카드 포트폴리오에는 특정 시점 기준으로는 대여금이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최장계약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Question:

은행이 계약만기가 12 개월인 주택담보대출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이자율은 12 개월 기간 초에 12 개월 동안 고정된다. 만기에는 대여자와 대출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대출은 자동적으로 만기가 12 개월 연장된다. 이자율은 만기연장 시점의 현행이자율로 재결정된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대출은 여러 번 만기연장 되고 수년간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IFRS 9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은행이 고려해야 할 기간은 얼마인가?

Solution:

IFRS 9 문단 5.5.19 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연장옵션 포함)이며, 이 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고려하는 기간은 12 개월의 계약만기까지의 잔여기간이다. 은행의 신용노출은 최대한 12 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기간 후에는 은행이 재량으로 해당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대출이 수년간 만기연장 되더라도 여기에서 목적적합한 유일한 사항은 대여자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계약기간이다.

이러한 IFRS 9 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기업이 계약만기를 초과한 기간 동안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대여금과 미사용약정을 모두 포함하는 특정 금융상품이다. 위 사례의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12 개월 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여금이 한도를 전액 사용한 것 인지와 무관하게 신용위험의 노출이 계약기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사업결합에서 매입한 채무상품의 손상회계

Question:

어떤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고 IFRS 3, '사업결합'을 적용하였다. 취득된 사업은 취득자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다수의 대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IFRS 3에서는 이러한 대여금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IFRS 9에 따라 기업은 취득시점에 별도의 손상차손 충당금을 인식해야 하는가?

Solution:

그렇다. 해당 기업은 먼저 취득을 IFRS 3에 따라 회계처리한 후 IFRS 9에 따라 별도의 손상차손 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IFRS 9의 영향으로 IFRS 3 문단 B41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취득 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의 효과를 공정가치 측정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즉, IFRS 9의 충당금이 영업권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FRS 9과 IFRS 3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제공되지 않는다:

- 영업권은 취득일의 이전대가가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 이 과정에서, 대여금은 IFRS 9에 따른 충당금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분류된다.
- IFRS 9에 따라, 사업결합 이후 매 보고일에 취득자는 취득일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매입한 자산에 대한 IFRS 9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를 위해 취득일 다음 날에 손상충당금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신용이 손상된 자산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대여금

Question:

기업이 £1,000의 대여금을 실행하였다. 해당 대여금 만기 동안 부과되는 총 이자는 연 20%이며 분기별로 분할지급된다. 대출자는 대여시점에 신용위험이 높고 기업은 대출자가 대여금의 일부 상환액을 연체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FRS 9에 따라 이러한 대여금은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Solution: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IFRS 9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특정 금융자산을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정의한다. 위 사례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해당 대여금이 실행되었으므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FRS 9 문단 BC5.216에서 신용이 손상된 채로 금융자산이 창출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는 부실자산의 실질적인 변경에 따라 최초의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변경은 새로운 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상태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새로 창출된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손상자산에 대한 제각 조건의 적용

Question:

IFRS 9 발표 이전에는 IFRS 7 문단 B5(4)(나)에서 금융자산의 충당금 계정잔액과 손상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상계하여 대손처리하는 기준에 대해 공시는 요구하고 있었지만, IAS 39 와 IFRS 7 모두 금융자산의 제각의 조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IFRS 9에서는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제각한다는 조건을 신설하였다.

금융자산의 ‘회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Solution:

‘회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은 관련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사항이다. 다음 표의 내용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 고려할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거나 명확한 구분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표	IFRS 9 의 제각 조건의 적용
보장/담보가 실행되었는가?	보장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담보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IFRS 9 의 문단 B5.4.9에서는 담보를 실행하기 전에도 금융자산의 일부분에 대해 현금흐름을 수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해당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장/담보의 실행 후에는 다른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업의 능력과 경험에 근거하여 제각할 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현재 해당 채권을 집행하고 있는가?	기업이 채권의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각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편, IFRS 7 문단 35F(5)에서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금융자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집행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특정 대여금을 제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대되는 결과의 범위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이 미래 현금흐름의 전체나 일부를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채무자의 상황 (예를 들어 청산 또는 가압류 절차 중)	공식 청산 또는 기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기업이 현금흐름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미 손상되었으나 기업은 청산인이 어떤 금액을 지급할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생성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만약 특정 자산에 대해 채무자가 청산시 이를 상환하기에 보유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지표	IFRS 9의 제각 조건의 적용
	자산이 충분하지 않음이 명확하다면, 청산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자산은 제각될 수 있다
연체일수	이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며 미래 현금흐름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각 시점 이후의 회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의 연체일수를 모든 포트폴리오에 적용하거나 이러한 지표가 그 자체로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지급일로부터의 경과 기간	위의 연체일수와 유사.

Question:

금융자산의 ‘회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조건은 개별자산 수준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포트폴리오 수준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Solution:

금융자산의 ‘회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해당 금융자산의 특성과 신용위험의 성격을 고려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별자산 수준 또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소매주택담보대출은 공통된 특성을 보유함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평가하고, 기업대출은 개별 대여금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